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5
----------	-------

발의연월일 : 2011. 10. 7.

발 의 자 : 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김성식 · 김성태 · 김재경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정진섭 · 정태근 · 최구식  
허원제 · 황영철 의원  
(20인)

제안이유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도급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도급인을 처벌할 수 없어 도급인의 연대책임 확보가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도급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최저임금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p> <p>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lt;단서 신설&gt;</p> <p>2. (생 략)                      ③ (생 략)</p> <p>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5조(최저임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p> <p>1. -----                      -----                      -----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벌칙) ① (현행 제6조 제1항 부분과 같음)</p> <p>② 제6조제7항을 위반한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